

변경대비표(ETF)

1. 대상 펀드:

n o.	펀드명	기초지수 명칭 변경	투자신탁 명칭 변경	보수 인하	분배 주기 변경	기타
1	미래에셋 TIGERKRXBIG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5), 6)
2	미래에셋 TIGERKRX2 차전지 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6)
3	미래에셋 TIGERKRX 바이오 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5), 6)
4	미래에셋 TIGERKRX 인터넷 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5), 6)
5	미래에셋 TIGERKRX 게임 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6	미래에셋 TIGERKRX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6)
7	미래에셋 TIGERKRX2 차전지 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	6)
8	미래에셋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	○	-

2. 변경 사항:

- 1) 기초지수 명칭 변경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 3) 보수 인하
- 4)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 5)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 6)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3년 11월 29일 (수)

4. 변경 내용:

- 1) 기초지수 명칭 변경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TIGERKRXBIG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BBIG 지수</u> "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BBIG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X바이오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바이오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바이오 TOP10 지수</u> "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바이오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바이오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X인터넷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인터넷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인터넷 TOP10 지수</u> "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인터넷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인터넷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X게임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게임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게임 TOP10 지수</u> ”를 말한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게임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게임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B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BBIG 지수</u> ”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u>KRX BBIG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 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BBIG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에셋TIGERKR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7. “지수”라 함은 “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말한다.	7. “지수”라 함은 “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말한다.
제3조(집합투자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	③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

	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하는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다.
제14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설명서]

미래에셋TIGERKRXBBIG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 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BBIG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BBIG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u>*기초지수: KRX BBIG K-뉴딜 지수</u> <u>※ 비교지수 : KRX BBIG K-뉴딜 지수 * 100%</u>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BBIG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u>*기초지수: KRX BBIG 지수</u> <u>※ 비교지수 : KRX BBIG 지수 * 100%</u>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u>KRX 2차전지 TOP10 지수</u>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p> <p><u>*기초지수: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u></p> <p>※ <u>비교지수 :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 * 100%</u></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p> <p><u>*기초지수: KRX 2차전지 TOP10 지수</u></p> <p>※ <u>비교지수 : KRX 2차전지 TOP10 지수 * 100%</u></p>
--	--	---

미래에셋TIGERKRX바이오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바이오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바이오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바이오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p> <p><u>*기초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u></p> <p>※ <u>비교지수 : KRX 바이오 K-뉴딜 지수 * 100%</u></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바이오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p> <p><u>*기초지수: KRX 바이오 TOP10 지수</u></p> <p>※ <u>비교지수 : KRX 바이오 TOP10 지수 * 100%</u></p>

미래에셋TIGERKRX인터넷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인터넷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인터넷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KRX 인터넷 K-뉴딜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u>*기초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u> <u>※ 비교지수 : KRX 인터넷 K-뉴딜 지수 * 100%</u>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KRX 인터넷 TOP10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u>*기초지수: KRX 인터넷 TOP10지수</u> <u>※ 비교지수 : KRX 인터넷 TOP10 지수 * 100%</u>

미래에셋TIGERKRX게임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KRX 게임 K-뉴딜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 KRX 게임 TOP10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u>*기초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u> <u>※ 비교지수 : KRX 게임 K-뉴딜 지수 * 100%</u>	<u>*기초지수: KRX 게임 TOP10 지수</u> <u>※ 비교지수 : KRX 게임 TOP10 지수 * 100%</u>

미래에셋TIGERKRXB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KRX BBIG K-뉴딜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 KRX BBIG 지수 "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BBIG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생략></p> <p>*기초지수: KRX BBIG K-뉴딜 지수</p> <p>※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KRX BBIG K-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 구성종목인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 선물 등의 주가지수 선물 및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관련 ETN에 일부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p> <p>※ 비교지수 : KRX BBIG K-뉴딜 레버리지 지수 * 100%</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BBIG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생략></p> <p>*기초지수: KRX BBIG 지수</p> <p>※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KRX BBIG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 구성종목인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KRX BBIG 지수 선물 등의 주가지수 선물 KRX BBIG 지수 관련 ETN에 일부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p> <p>※ 비교지수 : KRX BBIG 레버리지 지수 * 100%</p>
---	---	--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p>제2부. 7. 집합투자기관의 투자목적</p>	<p>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며,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을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양(陽)의 2배수로 연동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2부. 9. 가.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생략></p> <p>*기초지수: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p> <p>※ 포트폴리오 구성방안</p>	<p>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RX 2차전지 TOP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생략></p> <p>*기초지수: KRX 2차전지 TOP10 지수</p> <p>※ 포트폴리오 구성방안</p>

	<p>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 구성종목인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 선물 등의 주가지수 선물 및 KRX 2차전지 K-뉴딜 지수관련 ETN에 일부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p> <p>※ 비교지수 : KRX 2차전지 K-뉴딜 레버리지 지수 * 100%</p>	<p>이 투자신탁은 기초지수 일간수익률의 양(陽)의 2배수 수익률과 연동하기 위하여, KRX 2차전지 TOP1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수 구성종목인 주식,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KRX 2차전지 TOP10 지수 선물 등의 주가지수 선물 및 KRX 2차전지 TOP10 지수관련 ETN에 일부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p> <p>※ 비교지수 : KRX 2차전지 TOP10 레버리지 지수 * 100%</p>
--	---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TIGERKRXBIG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TIGER KRXBBIGK-뉴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BBIG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 TIGER KRX2 차전지 K-뉴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2차전지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바이오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 KRX 바이오 K-뉴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바이오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인터넷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 KRX 인터넷 K-뉴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인터넷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게임K-뉴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 KRX 게임 K-뉴 딜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게임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TIGERKRX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KRXBIG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BBIG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TIGERKRX2차전지K-뉴딜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미래에셋TIGER2차전지TOP1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3) 보수 인하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7조(보수)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5.4</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 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p>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투자업자 보수	<u>0.54</u>	<u>0.24</u>
지정참가회사 보수	0.01	0.01
신탁업자 보수	0.02	0.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	0.02
총 보수	<u>0.59</u>	<u>0.29</u>

4) 분배금 지급 기준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32 조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p>① <생략></p> <p>1. 지급기준일 : 매 1, 4, 7, 10 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p> <p><이하 생략></p>	<p>① <좌동></p> <p>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p> <p><좌동></p>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0.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위험. 나. 특수위험	<추가>	<p><투자신탁 월 분배금 지급에 따른 위험></p> <p>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등을 분배 재원으로 하여 매월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분배 금액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발생한 분배 재원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추적오차 등을 감안하여 매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분배금은 분배 자원 상황 등 기타 사유에 따라 매월 지급 방식에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분배 재원을 매월 분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이를 재투자하는 지수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는 성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p>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관세에 관한 사항 (2) 투자신탁분배금 의 지급	<p>① <생략></p> <p>1. 지급기준일 : 매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p> <p><이하 생략></p>	<p>① <좌동></p> <p>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p> <p><좌동></p>

5)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 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	------	------

제 13조 (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u>투자신탁재산으로</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u>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u>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생략>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생략> 나.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u> <중략>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생략></u>	-<생략> 나. <삭제>
제 42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u>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

미래에셋자산운용(주)